

이사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에이피알"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권한)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본 규정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성

제4조 (구성)

-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감사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②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6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문, 상담역 및 관계 실무직원을 출석시켜 안건에 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7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 (소집권자)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결원 또는 유고 시에는 제5조 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이사의 의결권은 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2. 사채의 발행, 주식양도의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3. 자기주식의 처분, 소각
4. 회사 주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5.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6.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7. 주주총회 소집권,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
8.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승인, 이사의 경업 거래 승인
9. 재무제표의 승인, 영업보고서의 승인
10. 중간배당
11.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의 합병계약서 승인
12. 간이주식 교환, 소규모 주식 교환
13. 대표이사 선임, 공동대표 선임
14. 신주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15. 전환사채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16. 기타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보고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경과 및 결과
2. 기타 이사회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13조 (의안의 제출)

- ①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할 의안에 관한 보고문서는 이사회 개최일 3 영업일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타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의안의 사전제출없이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록 작성)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위원이 기명 날인하여 본사에 비치한다.

제15조 (이사회 사무국)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업무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사회 지시에 따라 이사회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의사록 작성과 부의안건의 사후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 ② 사무직 직원은 소속직원을 인사발령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내 위원회

제16조 (이사회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이사회 판단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이사회내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
 - 1. 감사위원회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 경영전략위원회
 - 4. 리스크관리위원회
 - 5. 투명경영위원회
 - 6. 제도개선위원회

-
- 7. 인사위원회
 - 8. 예산심의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서 정한다.

제5장 기타

제17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부 칙 <버전1.0, 2017. 07. 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버전2.0, 2020. 7.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5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버전3.0, 2023. 6.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22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버전4.0, 2025. 4. 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7일부로 시행한다.